

"KBS<태양광 복마전> 방송에 대한 청와대 외압과 태양광 사업의 진실은?"

일시 2019.7.15(월) 오전 10-12시

장소 펜앤드마이크TV 스튜디오

주최  

후원 펜앤드마이크 TV (유튜브 생방송 중계)



■ 순 서 ■

■ 사 회

- 김 용 호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 제

- 허 성 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
- 이 준 신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백 승 재 (변호사 /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 종합토론

■ 폐 회



■ 목 차 ■

■ 발 제

1. 청와대 외압 의혹 일파만파, 진실은 어디에 있나? 9
- 허 성 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
2. 태양광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18
- 이 준 신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3. 청와대 언론 장악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34
- 백 승 재 (변호사 /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 〈미디어연대〉 현안토론회

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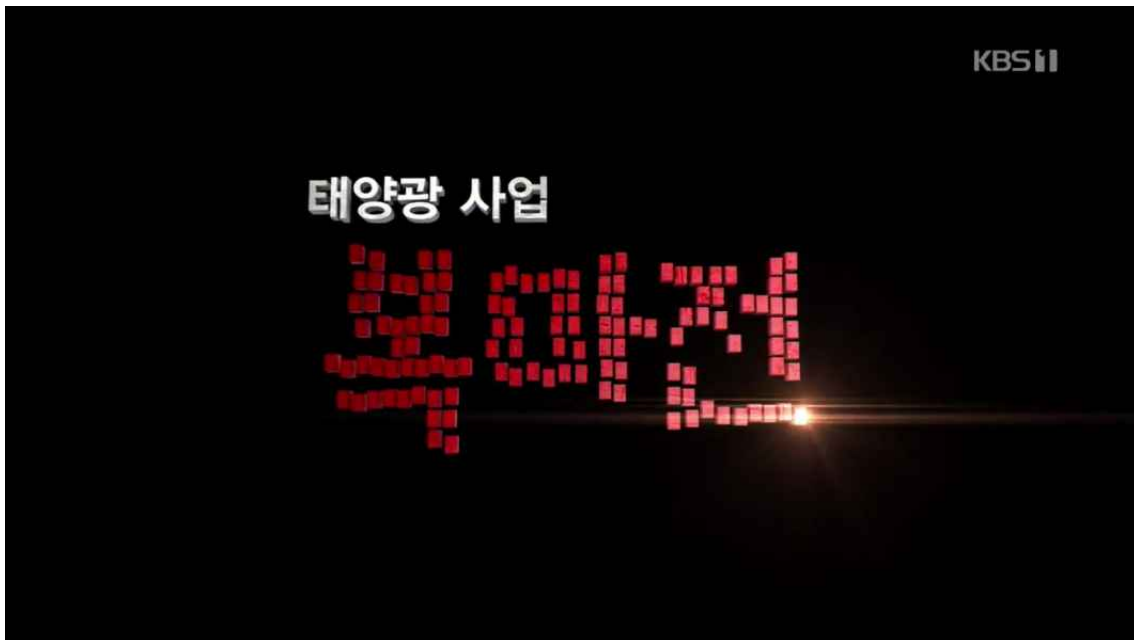
■ 허 성 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

■ 이 준 신 성균관대 교수

■ 백 승 재 변호사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 의혹 일파만파, 진실은 어디에 있나?**

허 성 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1573379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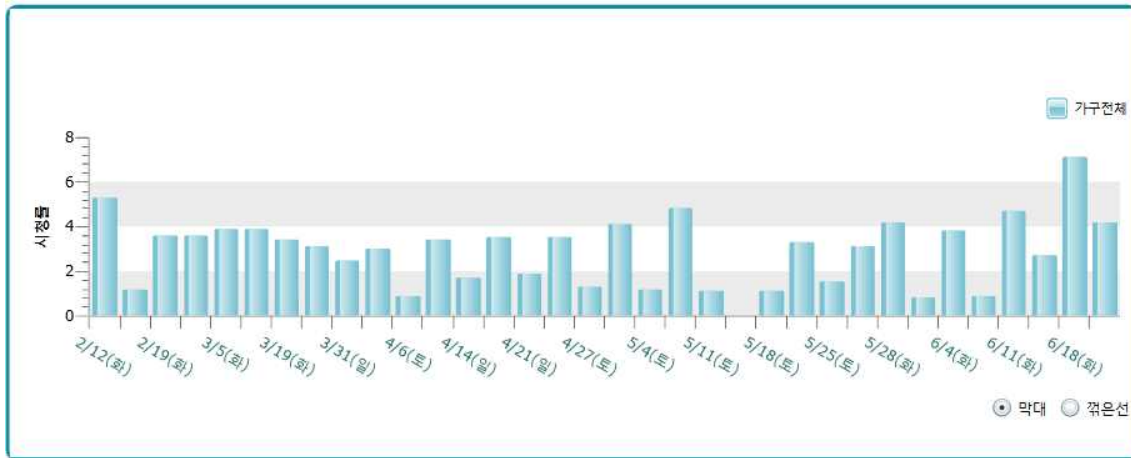
1.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 복마전 편에 대해

지난 6월 18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 등 난맥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약 50분에 걸쳐 풀어낸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들판과 산을 깎아 설치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태양광 패널들을 드론으로 내려다본 장면은 다른 언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충격을 선사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현 정부의 선거 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의심스러운 태양광 업체를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취재진은 동 업체의 우편함에 국민정치연구소 민주연대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 그 사무실은 노영민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임을 밝혔다.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언에 저수지 수면 면적 10%였던 패널 설치 비율 제한이 풀렸다는 최 전 사장의 증언도 확보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사기획 창 시청률 추이>

시청자들의 이런 관심 덕분에 시사기획 창 태양광 편(527회)은 올해 들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관련 내용이 있는 유튜브 조회수만 22만건이 넘어 <창>의 다른 회차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았다.

KBS 내외부 심의평을 봐도 호평 일색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제도적인 보호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과 이를 둘러싼 비리들을 고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취재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매우 의미있었음.”

재생에너지 개발 목적으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태양광사업은 권력 실세들의 개입 및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계속되는 투자열풍 속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취재하여 심각성을 알린 회차였음.

바로 이것이 KBS의 경쟁력이자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죽어버린 권력, 이미 다뤄진 사안을 다시 들추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공영방송이라면 시청자들이 내는 소중한 수신료로 살아 있는 권력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2. 청와대 외압 의혹 제기와 경과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창>이 방영되고 난 다음날인 6월 19일 KBS 보도본부장은 3개의 심의평을 보고 ‘스스로’ 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심의평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호평이었는데 보도본부장은 그것보다는 일부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재방송을 불방 시킬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KBS 청와대 출입기자는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주재하는 출입기자 만찬에 참석한다. 해외 순방 취재가 끝나고 하루 휴가를 냈지만 한 달 전에 이미 예정돼있는 자리여서 참석했다는 게 해당 출입기자의 얘기다. 이 만찬은 출입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로 발령 받은 지 4개월 만에 처음 열린 자리다. 윤 수석은 이 자리에서 출입기자에게 <창>보도에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잘못돼 정정 보도를 신청할 것"이라는 말을 꺼낸다. 출입기자는 정치부부장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라인을 통해 보도본부장과 시사제작국장에게 보고 됐다고 한다.

그런데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정정 보도를 KBS측에 요청했는데 사흘째 답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볼 때 만찬이 열린 19일 하루 동안 ① KBS의 누군가가 청와대로부터의 <창>관련 연락을 받았고, ②청와대 등 외부 어느 누구로부터도 연락을 안 받았다는 보도본부장은 스스로 <창>문제를 파악해 시사제작국장을 소환했으며, ③KBS 청와대 출입기자는 윤 수석과 만난 만찬장에서 ‘우연히’ <창> 정정보도 요청 예정 메시지를 듣는다. 사측은 이 3개의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의문의 시간이 지난 뒤 6월 21일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KBS의 ‘시사기획 창, 태양광 - 북마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시정조치가 안됐으며 사과 방송을 요구한다. 같은 날 <창> 제작진은 윤 수석이 주장한 허위보도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준비했다. 하지만 KBS보도본부장은 제작진의 입장문을 보류시킨다. 제작진의 취재에 문제가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22일 발생한다. 정규 편성에 있었던 <창> 재방송이 보도본부장의 지시로 불방된 것이다. 제작진은 불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도부 수뇌부는 물론 시사제작국장까지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다음날에야 불방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측은 미리 방송 보류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작진은 일관적으로 사측의 이런 주장은 거짓이며 불방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건 불방될 때까지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남았음에도 제작진과 불방에 대한 논의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측도 이 점을 인정했다.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 복마전> 외압 의혹 사태 일지

6월 18일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 복마전’ 방송
6월 19일	(주장)보도본부장 심의평 보고 ‘프로그램 문제있다’ 스스로 판단. (주장)KBS 청와대 출입기자 만찬장에서 윤도한 수석 만나 KBS에 정정보도 요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음. KBS 누군가가 청와대로부터 <창> 관련 연락을 받음.(윤 수석 언급)
6월 20일	(주장)청와대 출입기자 보도본부에 “정정보도 요청할 것”이란 말 전달
6월 21일	윤 수석 사과방송 요청 브리핑 열어. “즉각 시정조치 요구했지만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 발언 보도본부장, <창> 제작진의 입장문 발표 보류 결정
6월 22일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재방송 불방
6월 23일	제작진 “불방 통보 못듣고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다”
6월 24일	제작진 외압으로 누르려하지 마라 성명
6월 25일	KBS노동조합 ‘보도외압 망령이 살아났다’ 성명 KBS보도본부 보도위원회 개최
6월 26일	청와대 브리핑 “정상적인 절차 거쳐 정정보도 요구했다” 양승동 KBS사장 이사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전화받은 적 없다” KBS공영노조 “청와대 명백한 방송법 위반” 성명
6월 27일	청와대, KBS에 공문보내 정정 반론 보도 청구
7월 2일 ~ 4일	KBS 국장급 14명, 부장급 12명 연이어 외압 반대 성명
7월 4일 ~ 5일	KBS 노동조합 청와대에 진상조사 요청 서한 전달 및 피켓팅 KBS 공영노조, 시민단체, 한국당 윤수석 검찰에 고발
7월 8일	KBS “외압 없었다” 입장 발표
7월 9일	보도위원회 3차까지 열렸지만 성과없어 KBS노사 공정방송위원회 개최
7월 10일	KBS 노동조합 “시간끌기 2차 공방위 거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7월 15일	국회 과방위, 양승동 사장 불러 <창> 관련 외압 의혹 질의 예정

3.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1>외압인가 아닌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1일 백브리핑을 통해 “KBS 보도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KBS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예정됐던 재방송이 취소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윤 수석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 역시 함구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외압 의혹 규명은 안개속이다.

3차 걸친 KBS보도위원회에서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도 사측은 외부로부

터 아무런 비공식적인 연락은 없었고 제작진의 입장문 보류와 재방송 불방 등은 스스로 판단한 것이었다는 주장에서 한발도 비켜나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청와대 외압 의혹'을 긴급안건으로 다루려는 KBS 소수이사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다수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명시돼있다. 이 법 조항은 규제나 간섭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는 KBS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섭을 한 것이다.

“윤 수석은 KBS에 직접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으며 이는 방송법 총칙 4조 2항에서 규정한대로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한 것입니다. ‘정정보도’와 ‘사과방송’ 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의 권한이지 청와대의 권한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시사기획 창’의 방송내용이 팩트가 아니거나 거짓이 포함돼 있다면 윤도한 수석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팩트 여부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 7월 4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KBS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 중 발췌

<2>불방을 결정할 만큼 부실 또는 허위 취재였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태양광 업체 위치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입니다”라고 언급해 노 실장과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는 데 양측 관련성이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임.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언에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집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점도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임.

KBS 보도본부장은 호평 일색의 심의평 중 이같은 내용을 보고 보도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말 정규 방송을 끊을 만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①최규성 전 농어촌공사사장 인터뷰 관련

청와대는 프로그램 내용 중 “대통령께서 60%한 데를 보고 박수를 쳤거든, 그러니까 차관이 저기 사장님 30%도 이제 없애버립시다. 그래요”라는 최규성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의 녹취를 지적하며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청와대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농어촌공사 사장이 농림부 차관에게 들었다고 했으니 차관에게 확인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큰 결격 사유라며 취재 기자의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의 녹취가 농림부 차관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면 차관의 반론이 필요했겠지만, 녹취의 내용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을 확대해왔다. 대통령이 60%한 데를 보고 박수를 쳤다는 장소는 2018년 10월 말에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김현수 당시 농림부 차관이 최규성 사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최규성 사장은 정부 태양광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 3자가 아닌 ‘신뢰성 높은’ 핵심 관계자였다. 정부 정책의 큰 흐름에 부합하는 핵심 관계자의 말에 대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법적으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제작진은 또 문제가 제기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이미 외부 언론에서 밝힌 내용만 수백 건이며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태양광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뷰만으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최규성 전 사장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그러나 최 전 사장은 뇌물수수로 도피한 교육감 출신 친형을 도와준 죄이며 태양광 비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혹시 청와대의 강한 반발 때문에 보도본부 간부들은 이석재 기자에게만 ‘대한민국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때문에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서 농어촌공사의 수면적 비율 10% 지침이 2018년 3월 이미 자체 폐기됐었고 농림부 요청을 시작으로 지난 4월 복원됐다는 점도 사측이 제작진에게 취재 부실로 문제 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수면적 비율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부작용을 의식한 농림부가 비율을 지키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 견제해오다 최 전 사장이 농어촌공사사장이 되면서 비율이 100%까지 확대되다 다시 사장이 바뀌면서 원복이 되는 등 수면적 비율이 일관성 없이 춤추듯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널뛰기식 정책의 원인이 바로 청와대의 개입이라고 봤던 것이다.

②노영민 비서실장 개인사무실 관련

청와대와 사측은 또 기자가 여의도에 있는 최규성 사장이 운영하는 태양광업체를 찾아가면서 “우편함엔 국민정치연구소 민주연대라고 붙어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 역시 허위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사무실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2016년 여의도 KBS 앞에 개인사무실을 냈다는 사실은 과거 신문기사나 방송에서도 확인된다. 노영민 전 의원의 지역구 언론인 <충청타임즈>는 2016년 10월 12일 “노영민 전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의원측은 서울 사무실이 필요해 마련했고, 서울에 머무를 때는 이곳에서 주로 일을 보고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2016년 10월 11일 <TV조선> 방송도 “노영민 전 의원이 여의도 KBS 앞에 사무실을 냈는데, 여기가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16대 대선 때 노 실장 만나려고 많은 기자들이 들락날락했던 것을 직접 확인했었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개인사무실에 대

한 언론 인터뷰 내용도 근거로 사측에 설명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특수관계가 입증 안 된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식이니 어디까지 입증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③청와대에 확인을 안했다?

윤도한 수석은 6월21일 브리핑에서 “KBS는 아무 사실 확인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가 6월26일 브리핑에서는 “내부 확인 결과 순방에 동행했던 고민정 대변인에게 6월11일, 6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온 사실이 있다. 고민정 대변인이 순방에 동행했다는 사실은 웬만한 국민들도 안다. 문자 내용도 특별한 사안을 묻는 것이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번호로 자신이 누구라고 하고 보내온 문자였다. 공문으로 무슨 질문이 온 적도 없다”며 말을 바꿨다.

“청와대는 취재기자가 특별한 사안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라고만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석재 기자가 6월11일 고민정 대변인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청와대의 거짓말이 드러난다.”

심지어 이석재 기자는 그 전인 6월5일 유송하 춘추관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다. 대신 문자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내용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 사내 게시판에 제작진이 올린 글 중 발췌



4. 결론 - 상식과 진실이 이긴다!

이번 외압 의혹사건을 볼 때 양승동 사장 체제의 컨트롤 타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정보전달체계, 의사결정구조를 보면 보이지 않는 외부 세력이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의심된다.

KBS 사측은 "방송 전은 물론 본방송 이후 재방 보류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도 본부의 제작 책임자들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 청와대 측으로부터 외압은커녕 어떤 연락도 직접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은 전혀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서 더욱 커지고 있다. 급하게 회사가 입장을 밝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의혹의 눈길이 가는 간부들의 통화내역을 보여주면 믿겠다. 또 방송 이후 누구랑 점심 저녁 자리를 함께했는지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훨씬 더 신뢰가 가겠다.

KBS 취업규칙에 따르면 KBS 구성원 개개인은 공영방송의 가치, 수신료의 가치를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외압 의혹에서 보여준 KBS 수뇌부들의 행동은 과연 공영방송의 의무를 지켰을 지 의문이 따른다.

열심히 일한 기자가 벌 받고 동료편에 선 선후배들이 매 맞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진실과 상식은 언제나 이긴다. <끝>

태양광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일 : 2019. 07. 15
소속 : 성균관대학교
작성자 : 이준신 교수
연락처 : junsin@skku.edu
031-290-7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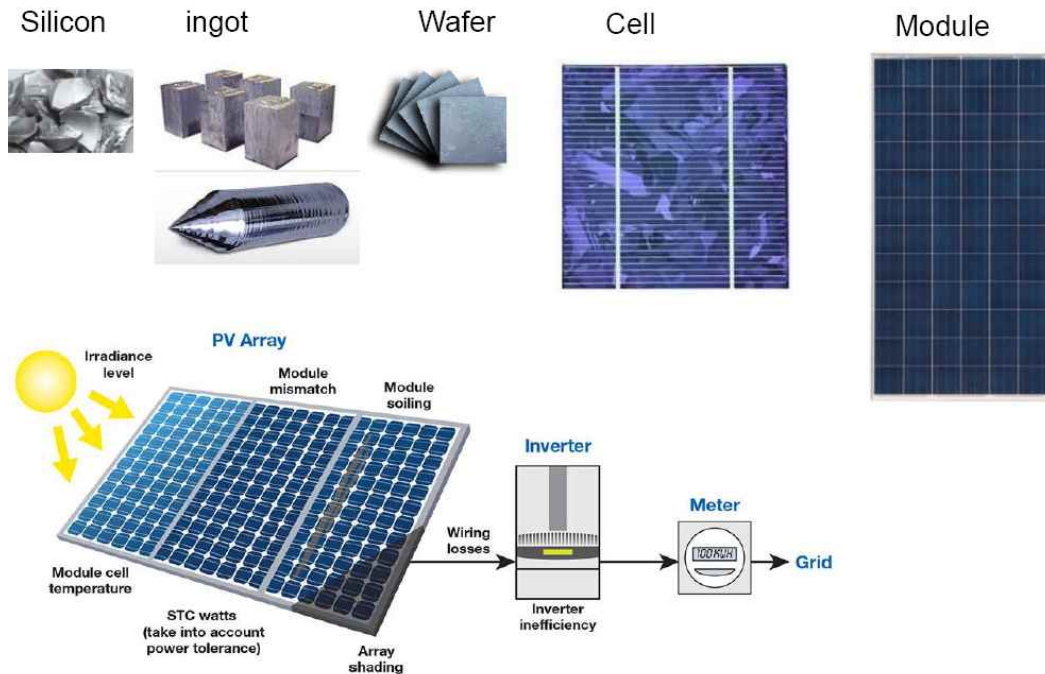
1

- 목 차 -

- 세계 태양광 시장
- 국내 태양광 시장
- 현정부 정책의 현황
- 맺음말
- **KBS '시사기획 창'에 개인 생각들...**

2

태양광 산업의 구성 (value chain)



3

태양광 발전의 장점

○ 태양광 변환효율과 가격

-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태양광 변환효율의 향상과 제품가격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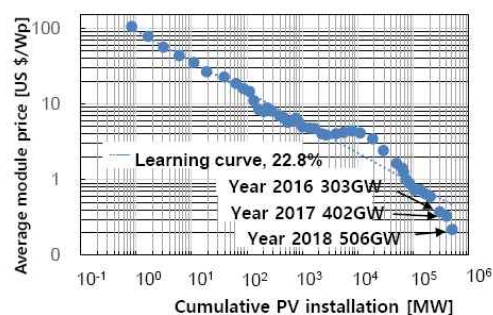
: 최근 8년간 단결정 태양전지 변환효율은 3.6%p 이상 향상 (설치면적 1/2 감소, 대면적 모듈)

* 2010년 단결정 230W(모듈효율 14.3%) → 2018년 다결정 280W(17.5%), 단결정 300W(19%)

* 변환효율 = $\frac{\text{단위면적당 모듈 출력}}{\text{단위면적당 태양광 에너지}}$

* 위의 모듈출력은 모듈이 60셀로 구성되며, 면적은 약 1.6m² 태양광에너지는 중위도 지역의 일사량 1,000W/m²을 기준

- 모듈가격은 약 1/9 이하로 하락 (2010년 1.8\$/W → 2018년 0.2\$/W)



○ 태양광 기술의 효율향상과 핵심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설치지역의 확대 및 보급 증가

- 육상 설치형, 수상 태양광, 건물일체형, 영농복합형, 구축물 활용(공장지붕, 방음벽/터널 등)

4

세계 태양광 시장

○ 태양광 누적설치량

- 2017년까지 402GW의 태양광이 누적설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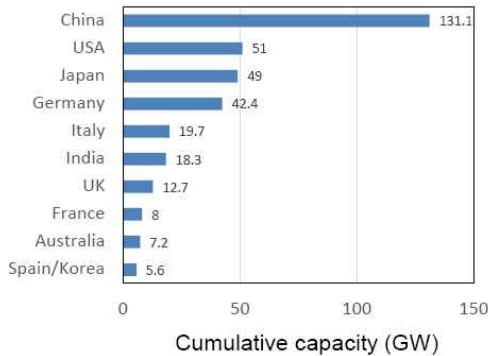
: 2010년 이전 태양광 산업초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태양광 시장을 선도함

: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심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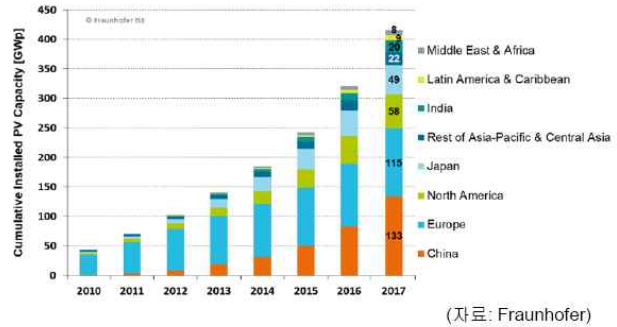
화석연료 비중이 '11년 87.9% → '12년 91.6%(최고점) → '16년 89.0%로 증가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에너지자급률이 하락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부담률이 '10년 1.9%에서 '16년 4.1%로 확대

: 중국은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시작하여 2017년 131GW를 누적 설치함



(자료: IEA PVPS, Snapshot 2018 of global PV marke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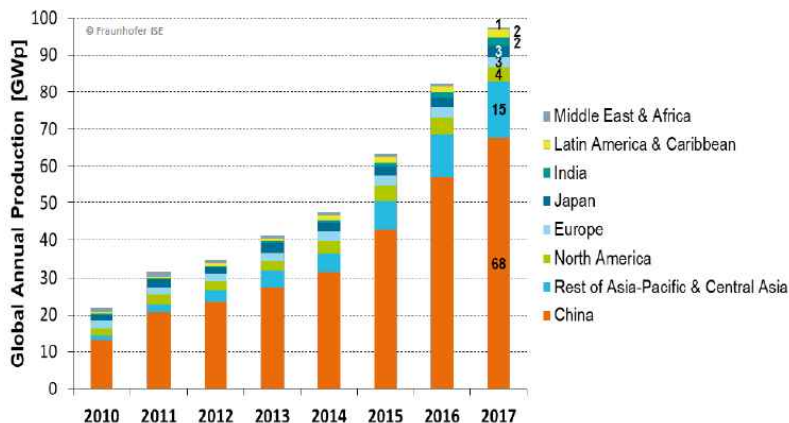
세계 태양광 시장

○ 2017년 98GW 시장

○ 2018년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예측되었음

- 상반기 시장 예측: 62GW('15) → 82GW('16) → 98GW('17F) → >100GW('18F)

- 2018년 상반기는 전년도와 비슷한 49GW 설치: 유럽 및 인도, 터키 시장의 양호한 성장



Data: Up to 2009: Navigant Consulting; since 2010: IHS. Graph: PSE GmbH 2018

☞ 중국의 '531' 발표 이후 태양광발전 시장은 급속하게 변화됨

6

세계 태양광 시장

○ 태양광 제품의 급속한 가격하락

- 세계 태양광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지원정책 축소로, 중국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
- 재고가 늘어난 중국업체들이 밀어내기 출하를 제품가격 크게 하락
- 11월말부터 가격하락세는 진정되었으며, 수요증가로 일부는 가격 상승

○ 태양광산업 value chain별 2018년 가격변화

기간	폴리실리콘(\$/kg)	웨이퍼(\$/장)	셀(\$/Watt)	모듈(\$/Watt)
1월	17.44	0.557	0.187	0.31
2월	16.03	0.526	0.18	0.306
3월	14.91	0.504	0.177	0.302
4월	15.41	0.493	0.176	0.299
5월	14.65	0.415	0.17	0.292
6월	12.22	0.35	0.144	0.28
7월	11.06	0.306	0.131	0.261
8월	11.21	0.311	0.125	0.253
9월	11.16	0.298	0.116	0.248
10월	10.01	0.271	0.102	0.226
11월	9.56	0.268	0.099	0.22
12월	9.53	0.272	0.103	0.218

Module price
Feb 06, 2019

Poly 0.216
Poly PERC 0.253
Mono PERC 0.272
Thin film 0.244
(자료: Insight)

45% ↓

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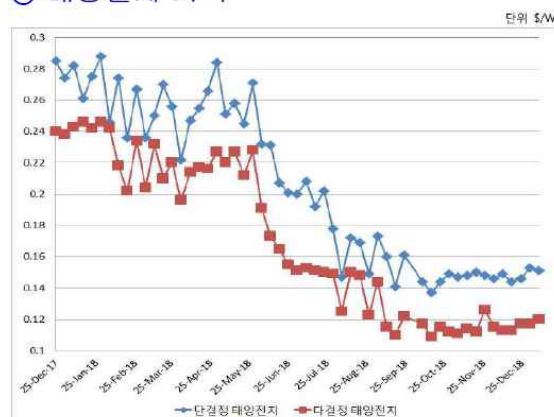
45% ↓

30%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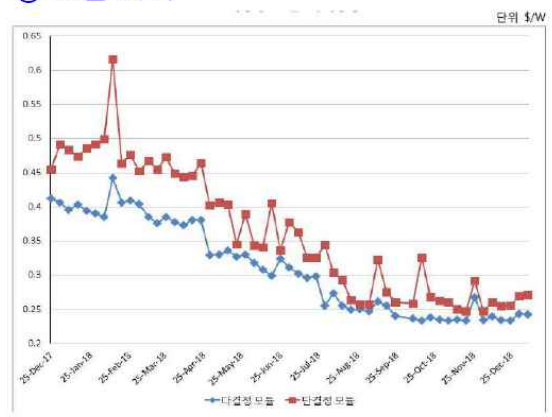
세계 태양광 시장

○ 태양전지 가격



자료 : BNEF, PV Insight

○ 모듈 가격



자료 : BNEF, PV Insight

8

세계 태양광 시장

○ GW급 태양광 시장의 증가

- 세계 GW급 태양광 시장은 2016년 6개 국가에서 2019년 15개 국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전환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태양광/풍력이 주목받고 있음
- 중국, 미국, 인도, 일본이 주요 시장이며, Emerging시장은 동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임.

	2016	2017	2018 (E)	2019 (F)	2020 (F)
No. 1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No. 2	USA	USA	USA	USA	USA
No. 3	Japan	India	India	India	India
No. 4	India	Japan	Japan	Japan	Japan
No. 5	UK	Turkey	Australia	Australia	Netherlands
No. 6	Germany	Germany	Germany	Spain	Germany
No. 7		South Korea	Turkey	Germany	Australia
No. 8		Australia	South Korea	Netherlands	Turkey
No. 9		Brazil	Mexico	Mexico	France
No. 10		Pakistan	Brazil	France	Spain
No. 11			Netherlands	Egypt	Mexico
No. 12			Egypt	Taiwan	Egypt
No. 13			Taiwan	Turkey	South Korea
No. 14			France	Brazil	Taiwan
No. 15				South Korea	Brazil
No. 16					Italy

(자료: Energy trend)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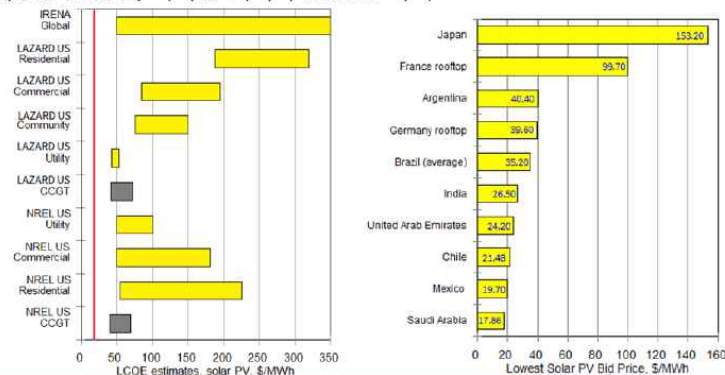
세계 태양광 시장

○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발전용량 가중평균)

- 발전 시설의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총 발전량의 현재 가치로 나눔
- 발전설비 설계과정에서 폐기 단계까지 발생한 총 투자비용을 시설의 수명기간 내에 회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평균 단위가격
- 국가별 용량별 LCOE가 차이가 있음. 전세계 평균 LCOE는 2010년 0.36\$/kWh에서 2017년 0.1\$/kWh로 감소하였으며, 한국 거주용은 0.17\$/kWh임 (IRENA)

$$LCOE = \frac{\text{초기투자비용} + \sum_{t=1}^n \frac{\text{유지운영비} + \text{이자비용}_t}{(1 + \text{할인율}_t)^t}}{\sum_{t=1}^n \frac{\text{발전량}_t}{(1 + \text{할인율}_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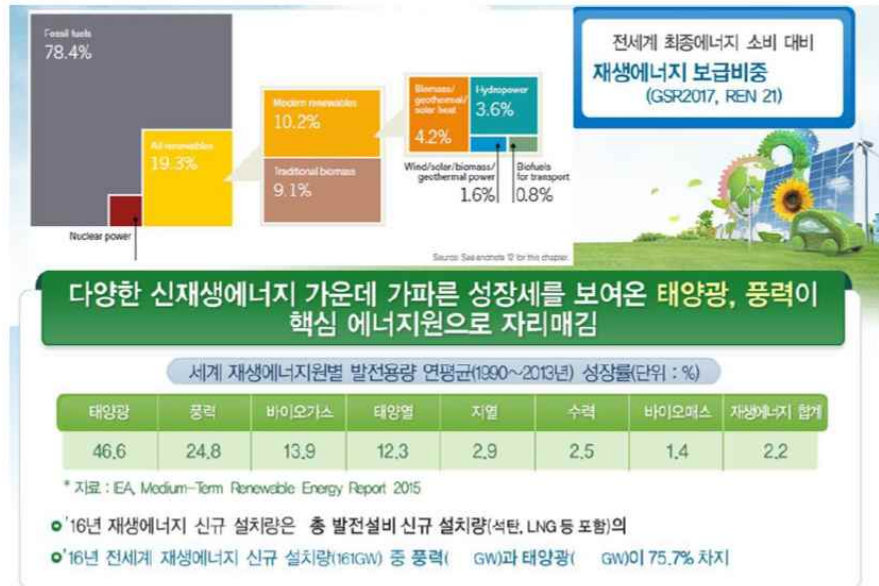
- 2017년 태양광 LCOE와 국가별 최저가 auction 가격



10

태양광 지역별 누적 설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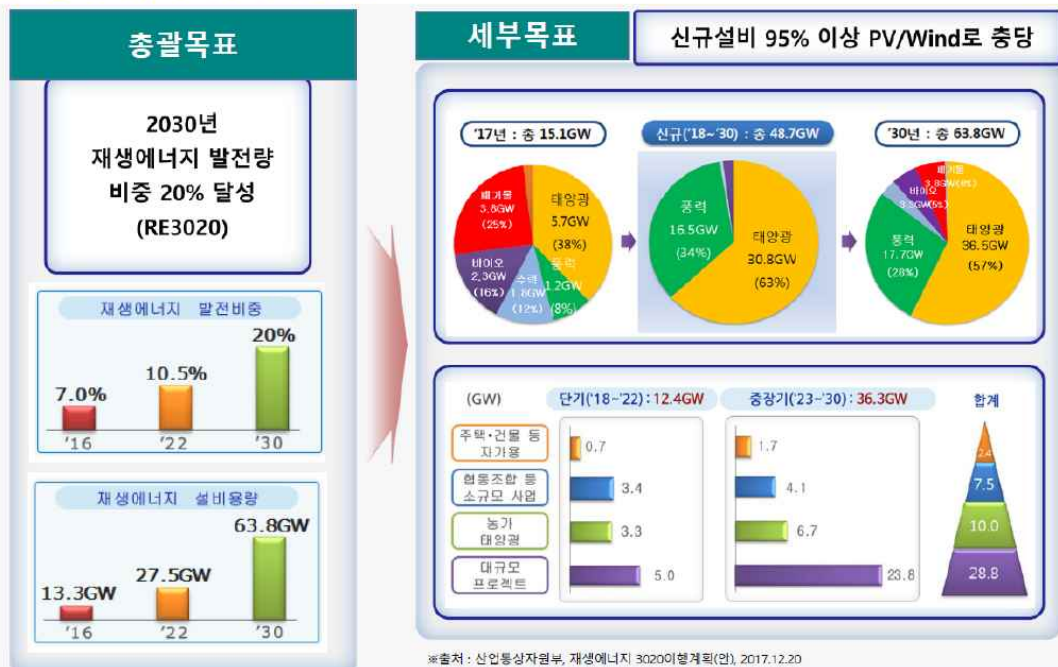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



11

국내 태양광 산업

○ 재생에너지 국가목표: RE 3020



12

국내 태양광 산업

○ 2018년 재생에너지보급용량

- 재생에너지 2,989MW가 2018년에 신규보급되었으며, 이중 태양광이 2,027MW임

[단위: MW]

구 분		신규			누적				신규	누적
		'15년	'16년	'17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8년
재 생 에 너 지	태양광	1,134	909	1,362	2,481	3,615	4,502	5,835	2,027	7,862
	풍력	208	187	114	645	853	1,035	1,143	168	1,311
	수력	3	19	6	1,769	1,772	1,790	1,794	6	1,800
	해양			-	255	255	255	255	-	255
	바이오	90	287	487	1,514	1,604	1,906	2,284	755	3,039
	폐기물	48	43	90	5,031	5,079	3,794	3,794	33	3,827
합계		1,482	1,445	2,059	11,695	13,177	13,281	15,106	2,989	18,095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

13

국내 태양광 산업 (소규모 설치, 발전 인력 제외)

○ 국내 태양광 제조산업의 실적추세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고용인원	8579명	8239명	8112명	7522명
제조기업	97개	123개	108개	118개
매출	59,097억	45,302억 (해외공장제외)	50,248억 (해외공장제외)	56,071억 (해외공장 8,287억원 제외)
수출	38억 달러	24억 달러	28억 달러	32억 달러
출처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해외공장 매출액

- 재생에너지 해외공장 매출액은 11,694억원으로 태양광(8,287억원, 71%)과 풍력(3,408억원, 29%)만 존재함

14

국내 태양광 산업

○ 국내 태양광산업의 분야별, 연도별 생산능력

구분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폴리 실리콘	TON	57,800	57,800	57,800	67,000	90,000	82,000	82,000
	MW	8,892	9,322	9,500	11,754	16,363	15,770	15,770
잉곳	MW	3,450	2,890	2,740	3,250	2,900	2,900	1,500
웨이퍼	MW	2,890	2,690	2,420	2,730	2,380	2,380	1,500
셀	MW	2,125	1,875	1,590	1,680	3,565	3,705	6,300
모듈	MW	3,504	2,852	3,070	3,580	4,880	5,800	8,290

□ 유의사항

- 폴리실리콘 사용량(Photon Consulting 자료기준)
 - 6.5g/W('11년), 6.2g/W('12년), 6.0g/W('13년), 5.7g/W('14년), 5.5g/W('15년), 5.2g/W('16~'17년)
- '17년 잉곳·웨이퍼 생산용량에서 '17년 11월에 파산선고 받은 넥솔론 제외

자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15

국내 태양광 산업

○ 태양광 모듈

- 제조원가 경쟁과 공급과잉이 가장 심함
 - : 제조분야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투자비와 기술숙련도 낮음),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
- 자국산 제품 우대, 징벌적 관세와 같은 통상 마찰 환경에 제일 많이 노출
- 중국이 주도하지만, 중국의 생산기지 다국화로 생산지역 다양화
 - :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 미국
- 국내 기업의 현황
 - : 주요 시장 - 한국시장, 미국 (수출의 68%), 일본 (수출의 12%)
 - : 중국 모듈의 국내 시장점유율 증가
 - * 17% ('14년) → 21% ('15년) → 27% ('16, '17년) → 33% ('18년)
 - : 시장상황 및 수익성악화로 모듈생산을 중단하고, 다운스트림 (사업개발 및 시공관리)에만 집중하는 모듈업체 증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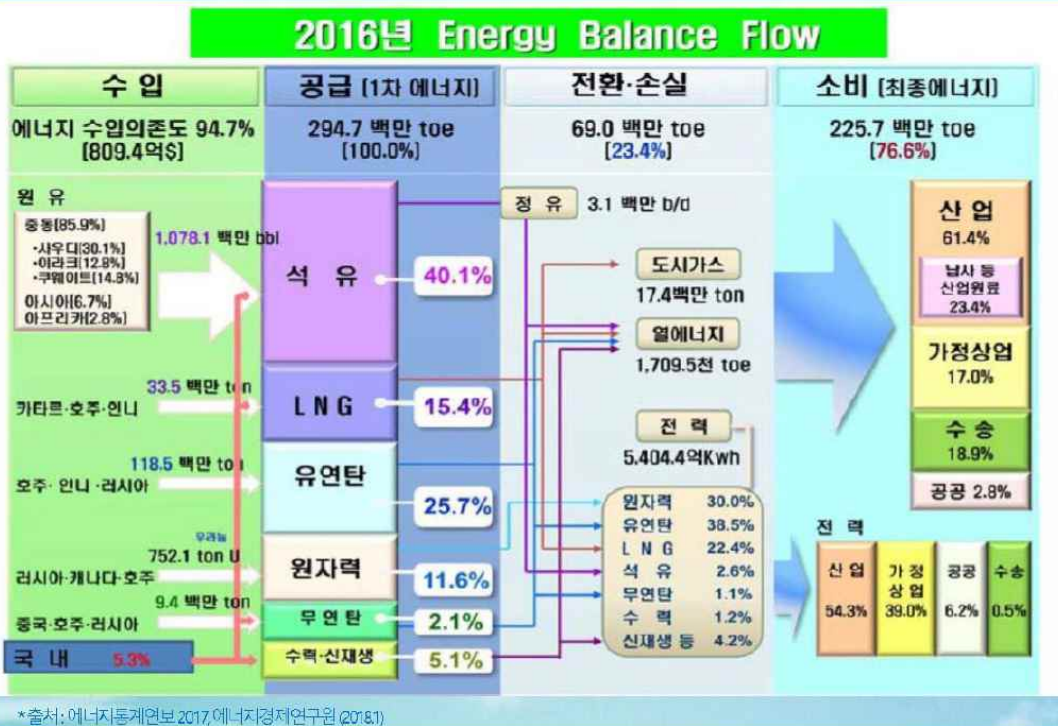
태양광업체들의 위기대처 사례

- 공격적인 설비확장과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후발주자와의 격차 확대
 - Longi, Tongwei, BYD, Risen 등
- 설비효율화, 인력감축, 생산구조(지역, 모델)의 조정을 통한 비용 감축
 - First Solar, SunPower 등
-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마케팅
 - Hevel Solar(Heterojunction), Enel, Tempres Systems(Bi-facial)
- 다른 기업과의 합종연횡
 - SunPower(美)는 중국의 DEC 및 TZS와 조인트벤처 설립
- 셀/모듈업체의 판매지에서의 생산기지 다극화: 비용 절감, 무역규제 대응
 - OCI, Trina Solar, longi, JA Solar, LG, Hanwha 등
 - Longi는 '17년 10% 수준이었던 해외모듈 공급 비중을 '18년 30%, '20년에 50% 확대 계획
 - JA solar는 한국에 신규 자회사를 설립(2018년 6월)하고,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화
- 태양광 유지관리 (O&M) 서비스 강화
 - Canadian solar는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O&M 부서를 신규 설치(2018년 3월)
- 디지털 비즈니스의 강화: Smart Energy Network 사업 구축
 - GE, ABB, Schneider, SMA, Huawei, Google 등

자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자료 편집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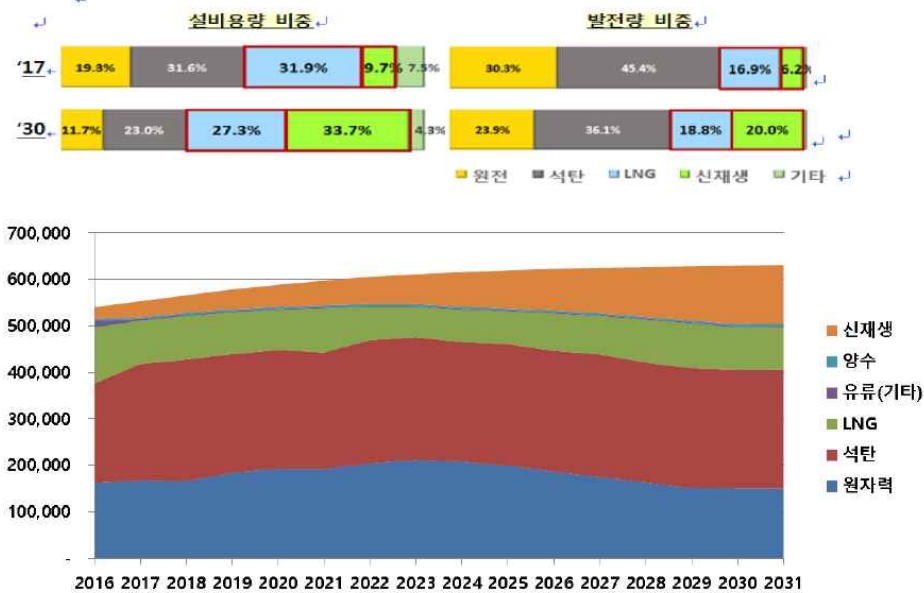
국내 에너지 수급/공급 현황



18

국내 에너지 정책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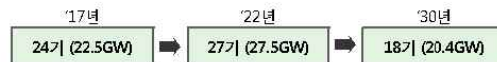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과제



19

국내 전력예비율 계획

1 원자력 발전



2 석탄 발전



3 신재생 발전



4 LNG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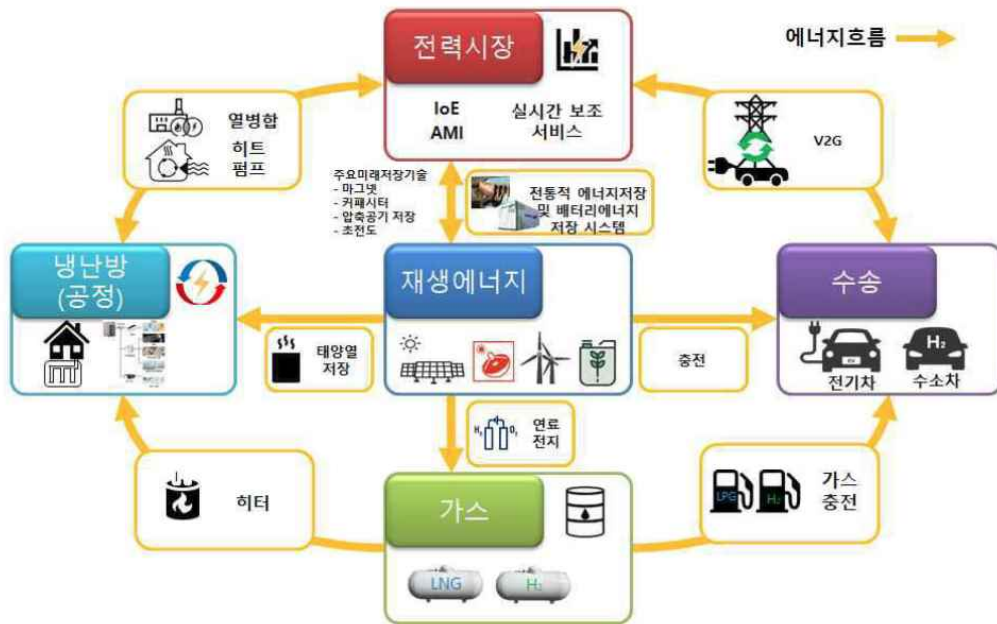


설비예비율



20

국내는 이미 수소에너지로 이동중...



21

국내 도심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다양한 규제로 고통중...)

기존 단순 태양광발전 시스템 → 건자재 일체화 → 건물에너지 절감 + 미적인 요소 고려

건물 위에 덧붙이거나 얻는 BAPV

다양한 건축 형태와의 일체화

다양한 크기, 색상, 설계 등의 미적인 요소

미적인 요소

색상/디자인/다양한 소재/설계 등 미적 요소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모듈 및 시스템

건물 에너지

Vacuum Layer: 기밀: 가장 두꺼운 층의 불투명 유전체로 열손실을 최소화 (층과 기공들의 난방 부하 최소화)

Stainless steel plate: 기밀: 최외곽 층의 불투명 유전체로 열손실을 최소화 (층과 기공들의 난방 부하 최소화)

Double or Triple Insulation glass: 기밀: 최외곽 층의 불투명 유전체로 열손실을 최소화 (층과 기공들의 난방 부하 최소화)

Clear glass: 투명: 최외곽 층의 불투명 유전체로 열손실을 최소화 (층과 기공들의 난방 부하 최소화)

자동화된 유리: 기밀: 최외곽 층의 불투명 유전체로 열손실을 최소화 (층과 기공들의 난방 부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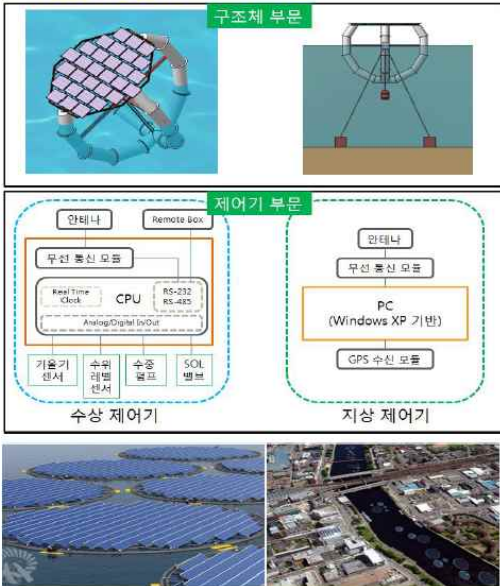
단열/투과율/냉난방 부하 등 건물 에너지 절감 기술 결합

시민 반대, 빛 반사 오염? 전자파? 인허가 22

국내 수상용 태양광발전시스템 (환경부 보류중...)

➢ 인공 섬, 호수, 저수지, 또는 담수호 등의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 하는 것으로, 부유체 및 계류장치, 태양광 모듈, 전기 설비 등으로 구성됨.

➢ 수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념



➢ 수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지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함
- 대지가 좁은 국내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 시 산림 훼손 등의 문제 발생
- 대지에 대한 비용 문제 발생
- 태양광 모듈은 온도 상승에 따라 효율이 저하됨
- 이러한 특성에 따른 효율 저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제도적 배경

- 2011년 발전차액지원 제도 종료 후, 2012년 RPS 사업 시행
- 5대 지목에 대한 가중치 1.0에서 0.7로 변경
-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 1.5 (2013년)



시민 반대, 물고기 보호?, 중금속 용출?

23

국내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농어촌공사 보류중...)



<벼>



<콩>



<감자>



<양계장>



<블루베리>



<귤>

인허가, 산림 경사 15도, 농민 무자본

24

<사진은 모두 일본의 사례임>

태양광발전시스템 (계통연계 보류중...)



✓ 765kV, 345kV: 수도권 집중 (34%)

✓ 154kV: 전국에 고르게 분포

송전선로

765kV

345kV

154kV

HV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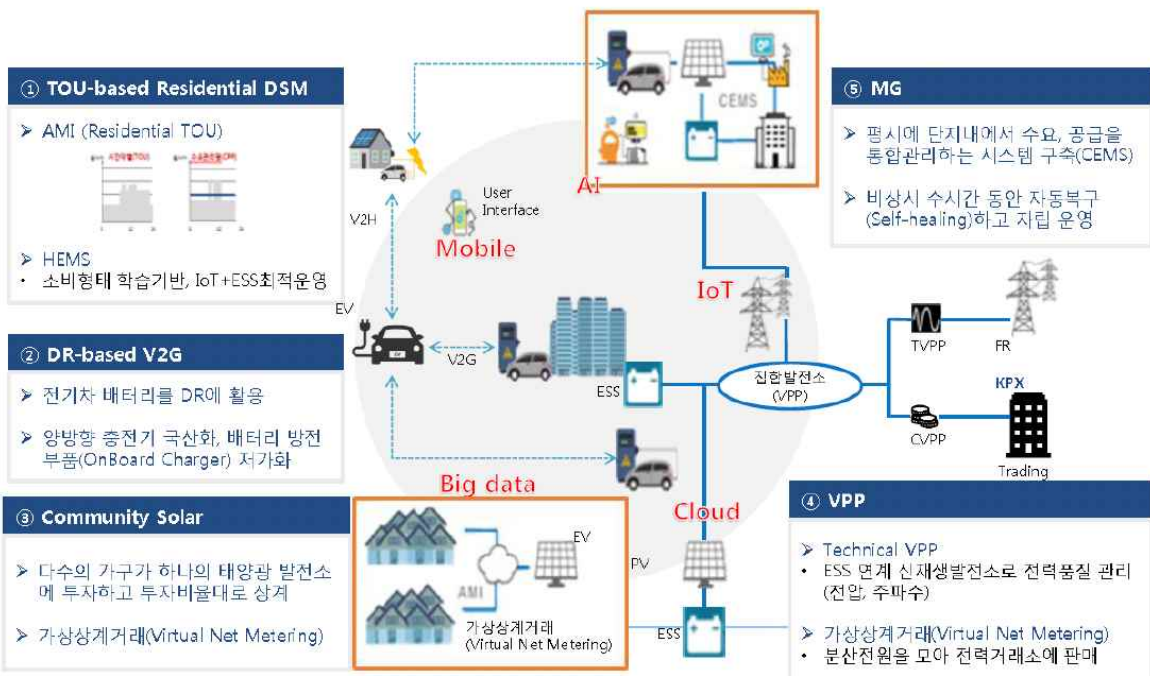
변전소

총 830개 운영 중
- 698개 무인화 (84.1%)

특히 전라도 쪽 2년 이상 대기

25

에너지 4차산업 혁명?



ESS 중지, 가상거래 미성숙, AI, IoT?

26

<미성숙 기술, 근시일 적용 어려움>

국내 3020 전략 효과? (대기업 영향無, 소기업 영향有)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신규설비('18~'30) : 48.7GW

태양광·풍력

→ 신규설비의 95% 이상



보급사업에
수출경쟁력?

보강 필요

도시형태양광 확대
(2.4GW)



- 자가용 설비 보급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
- 주택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 보상

소규모사업 활성화
(7.5GW)



-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 보장 및 절차 간소화(한국형 FIT 제도 도입)
- 협동조합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농촌지역 태양광 확대
(10GW)



- 임해간척지(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일사사용 등 규제 개선
- 영농형 태양광 모델 신규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28.8GW)



-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 도입('18년)
- 원전·석탄부지 활용,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등 중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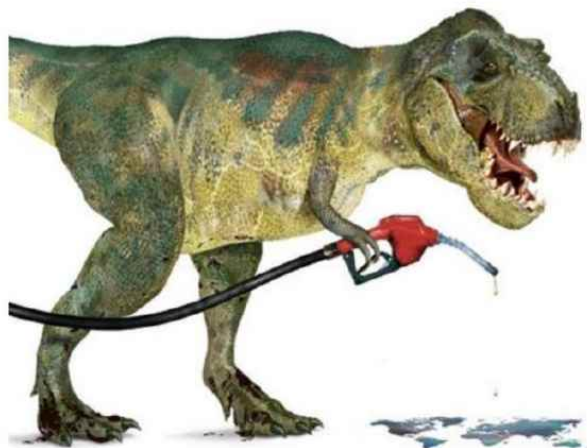
27

에너지의 미래?

The future of oil

Yesterday's fu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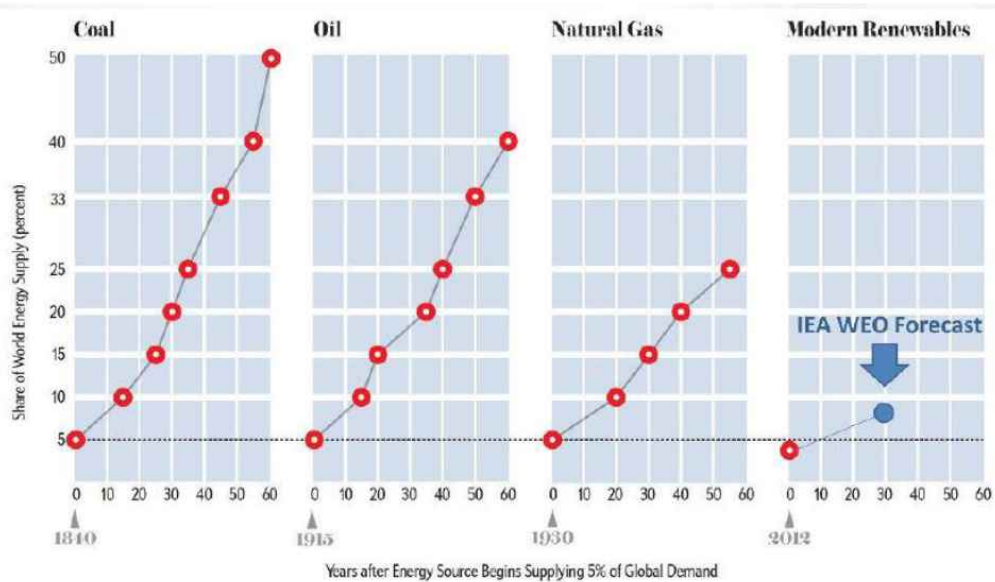
The world's thirst for oil could be nearing a peak. That is bad news for producers, excellent for everyone else



Jon Berkeley

28

에너지의 주권의 변화 속도



*출처: Vaclav Smil(2012) and IEA WEO(2016.6)

29

맺음말

-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독일, 영국, 호주 등 Big7중심
 - Big7가 세계 태양광시장의 80%이상 차지
- 개발도상국 중심의 신흥시장은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주요 시장 : 브라질, 칠레, 멕시코 (중남미) 남아공(아프리카), 태국(아시아) UAE(중동)
- 국내의 태양광기업들은 정당의 공격과 원자력 단체 및 이해 당사자 반대로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세제 등의 제도적 지원,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제구축**, 업체들의 자금조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의 역량강화, **연구개발지원 확대** 필요함
- 태양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악화, 공급과잉의 완화와 수익성 개선 그리고 **에너지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기회창출 가능**
- **한국 (수출이 80%인데 수출 대응 정책 보강 필요)**
 - Fact 공유 센터, 보급관련 인력확충(國內外), 중소기업 품질 개선사업 방안 강구

30

Fact Check를 통한 의견

- KBS 보도본부가 시사기획창 ‘태양광사업 복마전’ 편 방송 [이준신 개인 의견]
- 태양광 복마전을 비판한 KBS 보도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을 청와대가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 심기를 건드린 문제의 대목은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인터뷰다. “[모 부처] 차관이 처음에는 [저수지 10%로 제한한 패널 설치 규정을] 30%로 합의해 주다가 다 풀어 버리더라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60% 한 데를 보고 박수를 쳤거든” [최규성 사장은 계획도 수립을 못하고 수개월 되지 못해 퇴임 사직함, 현재도 보류됨]
- 뉴스제작3부 소속 양지우 기자도 3일 “윤도한 홍보수석이 방송이 나간 뒤 KBS의 보도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사과를 요구했다고 공식 발언했다. [방송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도 권력을 조심해서 사용하기를 바라며, 홍보 수석은 Fact에 기반한 사실을 표명하고 홍보하는 수준의 대응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방송 또한 비판을 해도 Fact에 근거 비판, 제시된비판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기한 문제는 보급 초기의 문제가 다수, 국회에서 부동산 전용 방지법 실시됨, 설치 대지의 각도 15도 이하 확정, 대안 제시와 프로그램 감수 등에 전문가 의견 보강에 노력이 있으면 한다]

31

Q & A

32

청와대 언론 장악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백 승 재

변호사 /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1. 들어가며

언론장악이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발간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기 언론 장악백서’를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과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낙하산 사장 투하 등을 통해 언론사의 경영·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¹⁾를 말하는 데, 소수기득권층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언론구조를 개편하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²⁾

최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난맥상을 고발한 KBS ‘시사기획 창’의 방송에 대하여 KBS측에 ‘시정조치’ 및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 방송’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이로 인해 KBS 측은 예정되었던 ‘재방송 결방’ 및 ‘취재진의 반박 입장문 발표’를 막은 사건이 문제되고 있다. 이는 KBS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통해 세월호 보도를 막았다 하여 기소된 박근혜 정부당시 수석 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해 작년 2018. 12. 법원이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³⁾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언론장악사건으로 그 내용상 유사성이 매우 높아서 청와대의 언론장악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발생한 청와대의 언론장악 사례와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본다.

- 1) 언론사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언론제도를 개편하는 행위, 저항적인 언론인·시민을 탄압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 2)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백서’ (2017. 9.), 11면
- 3) 2016.6.27. 세월호특조위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당시 김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016.6.30.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6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KBS 보도에 개입한 정황을 녹취록으로 공개하였다.

2. 청와대의 언론장악 사례

문재인 정권은 2017. 9. 더불어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계획문건⁴⁾에 기재된 바처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해임처리나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지나치고 거칠게 언론을 장악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에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탈북기자 배제 논란이 나오면서 언론통제 논란이 일었고⁵⁾,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에서 해당 기사를 쓴 블룸버그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공격하자 외신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논란은 국내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의 여론이 빗발쳤다.⁶⁾

문재인 정권은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론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지난 2018. 4. 1. 만우절에 신 전대협 소속 대학생들이 문재인 정권을 풍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사건에 대해 전국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대학교에 함부로 들어와 지문채취, CCTV확인, 차적조회를 통해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을 색출하여 심하게는 국가보안법으로 약하게는 불법광고부착물 사건으로 조사한 사건이 있었고⁷⁾, 인터넷 검열 시비를 불러일으킨 HTTP 차단이슈⁸⁾ 또한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 논란에서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7. 10. 23. 매주 월요일에는

-
- 4) 2017. 9. 8.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영방송 야당측 사장·이사진 퇴진을 목표로 담은 '언론적폐 청산'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야당 측 이사들의 개인 비리를 부각시켜 퇴출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 퇴진 문제와 관련,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면전에 나설 시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를 활용하자는 방침으로 보인다.
- 5) 2018년 10월 15일 통일부(통일부장관 조명균)가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리는 2018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풀기자단에 탈북자 출신인 김명성 조선일보 기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일이다. 이에 따라 언론통제 논란이 일었다. 이 일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직무집행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허가·검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1~2항과 관련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당시에는 "통일부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국가가 북한 이탈 주민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방미(訪美) 취재단을 구성할 때 정부가 특정 기사를 반미(反美) 투쟁 전력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빼버린 것과 다를 게 없기에 차별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다. 이는 "탈북민 지위·처우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6) 서울외신클럽 이사회는 2019. 3. 16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 개인에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기자 개인의 신변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메리칸 기자협회도 모두 블룸버그 기사를 지지하였다.
- 7) 이는 심각한 언론통제 사건으로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이언주, 이병태, 백승재) 언론통제 여론조작위원회(위원장 이인철 변호사)에서는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제출하였다.
- 8) 2019년 2월 11일, 정통통신위원회가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겠다고 시작하였는데, KT부터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인터넷 검열의 문제점이 점차 공론화 되었다.

지난 일주일간의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 대통령 후보시절 썰전에 나와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으며 고소 고발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4. 4. 저녁 7시 20분 경 발생한 고성, 속초지역의 대형 산불이 발생할 당시 5시간 동안 보이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갖고 이의 확인을 요구하는 80명이 넘는 네티즌과 언론인에 대하여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언론탄압이 심해진 상태이다.⁹⁾

3. 언론장악을 규제하는 법률규정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헌법이 규정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공적 사안들을 숙지하고 그에 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관련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은 공기업, 사기업을 불문하고 주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실하고 공정하게 보도 해야만 한다. 한편, 진실하고 공정하게 제반 권력을 감시, 비판, 견제하려는 언론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외부의 압력과 충돌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제도 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인의 행위는 또 언론사 내의 압력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인은 자신들이 취재, 보도, 제작 하는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 역시 국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그것이 편집권의 문제이며, 언론의 내적, 외적 자유의 문제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제4조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4조 1항과 2항은 언론의 이러한 내·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현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고단8762)은 동조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이며, 언론 중에서도 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내용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외부세력 특히 국가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특히 방송법은 제4조 제3

9) 이에 대해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에서 네티모(네티즌 피해자 모임)에 대한 법률지원을 했으며 이들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공개정보청구를 하였고, 네티모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항에서 인사권을 가진 경영자의 편성권 침해를 방지하고 내적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4항에서는 내적 자유(자율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을 제정 운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 동법 제105조와 제106조에서 각각 제4조 제2항과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윤도한 청와대 수석의 KBS 시사기획 '창'에 대한 언론보도 개입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 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윤도한 청와대 수석 발언의 법적 문제점

가. 시정조치 요구 -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

2019년 6월 18일에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장려하는 해당 산업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인용 보도 했다. 방송에서 최 전 사장은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 60%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고 했다. 제작진은 최 전 사장의 이러한 발언을 "당초 환경 등을 고려한 면적은 10% 이하였으나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언에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소개했다. 그러자 2019년 6월 21일에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하여 '(KBS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실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방송 당일 고발인이 KBS의 누군가에게 연락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으로 국정홍보 및 홍보기획, 대변인, 해외원론, 춘추관, 디지털소통센터 등 언론과 관련된 청와대 업무를 지휘하는 자이다. 이런 윤도한 청와대 수석의 지휘를 고려하면 윤도한 청와대 수석의 시정조치 요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KBS를 은밀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임자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언

급된 바와 같이 단순한 의견제시를 넘어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구체적 요구’로 보기에 충분하다.

방송법 제4조는 제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르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위반에 대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사례가 법률을 만든지 31년만에 적용하는 첫 케이스 인 만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에 대한 하급심 법원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이며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홍보수석의 요구는 보도국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전화 내용, 어조, 말투 등을 비춰보아 해당 전화는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구체적 요구에 해당하며, 만일 방송 편성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송 편성 개입 의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 의미를 살폈을 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오보를 정정하려 했다면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하급심 판결의 판시내용이다.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동일한 직책의 수석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난맥상을 고발한 KBS ‘시사기획 창’의 방송에 대하여 KBS 측에 ‘시정조치’ 및 이와 함께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 방송’을 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KBS 측은 예정돼있던 재방송 결방 및 취재진의 반박 입장문 발표를 막았는데 이는 공영방송 KBS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나.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 요구 -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 방송 명령이 위헌임을 결정한 바가 있다(2009헌가27). 따라서 윤도한 청와대 수석의 사과방송 요구는 방송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행정기관이 사과 방송을 ‘명령’하는 것이 위헌일 뿐 방송사에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을 제기하였지만,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통상의 정정 보도를 넘어 사과 방송을 요구하고, 그것도 이미 청와대와 여당을 통해 계획한 대로 시민 단체와 언론노조를 동원하여 형사고발 등을 통해 임기만료 전이라도 사장과 임직원을 내보내고 교체한 사실이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국정홍보책임자가 강도 높게 요청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KBS측에서는 행정기관의 명령 이상의 오히려 더 큰 압력이 가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KBS 방송편성규약 제4조 제2항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제5조에서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서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호받으며 그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취재 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청문하고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때 만약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결국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이 결방되었는데, 이는 윤도한 청와대 수석이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공적지위를 이용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방송 편성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사안과 비교해보면 재방송 결방이란 KBS의 방송 편성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

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0도13766). 이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3도 4599).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KBS측에 전화를 걸어 시정조치 및 정정방송과 사과 방송을 요구하였고, 이에 KBS는 ‘시사기획 창’의 예정된 재방송을 결방하였고 제작진의 반론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는 윤도한 청와대 수석의 압력으로 인하여 공영방송 KBS가 의무 없이 재방송을 결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KBS의 방송 편성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 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청와대의 언론장악에 대한 법적인 대응조치

가. 방송법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이미 본바와 같이 최근 발생한 시사기획 ‘창’의 보도에 개입한 윤도한 청와대 수석과 실제로 재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책임이 있는 편성국장 과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양승동 KBS 사장을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죄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다.

나.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추진 등은 2017년 9월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내부문건에서 제시된 각본과 똑같이 진행되었다. 이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및 청문절차가 무시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편향된 정치논리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보여주었다.

이에 방통위나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하여도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현 정부의 잘못된 방송장악 시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단체의 물리적 폭력행사나 명예 훼손 발언에 대하여 사진촬영, 녹음을 하여 자유우파 시민단체들과 함께 형사 고소 및 고발하는 것으로 언론장악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2019. 7.15.